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서비스 이용계약
 -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단,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계약일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비급여,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 시 구비서류

이용의뢰 및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1부.

3.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최초 계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장기요양대상자의 사망, 요양원 입소 및 병원입원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발생 시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다. 또한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 액[이하 “보험료액” 이라한다.] 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3.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보험료 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 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 수별 재산과표액 기준 이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신원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1) 수급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3)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6)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 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행복마루방문요양센터